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11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 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연구원의 사업 및 정관 기재사항, 임원 및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4조부터 제7조)
- 나. 출연금, 운영재원, 사업연도,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8조부터 제12조)
- 다. 보고 및 검사,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(안 제13조부터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, 민법 제32조
- 나. 예산조치 : 2018세출예산 반영 예정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 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없음

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협의완료

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대상

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개선의견

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17. 8. 10. ~ 8. 30.) 결과 : 별도 붙임

(2) 비용추계 등 자료 : 별도 붙임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강정환 (☎ 2133 - 8035)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설립) 연구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연구 분야) ①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한다.

1. 재난 예방 및 대응(지진, 화재, 폭염·한파, 폭설, 산사태 등)
2.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(도로, 지하철, 주택건축, 교량 등)
3. 물 순환 및 하천관리(풍수해, 생태, 하수도 등)
4. 그 밖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연구원은 조사·연구 시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관)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5. 임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의 운영
7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8. 예산과 회계
9. 정관의 변경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연구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감사는 연구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이사회) ① 연구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.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재원 등) 연구원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사업연도)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2조(결산서의 제출)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원의 경영

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5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재단 출연금(기본재산 및 운영비)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

▶ 조례안 제8조(출연금 등)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거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- 가격기준 :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세부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
- 추계기간 :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('18년~'22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억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'18)	2차년도 ('19)	3차년도 ('20)	4차년도 ('21)	5차년도 ('22)	합계
세 입	○ 수탁연구비	14.0	35.0	43.8	54.7	68.4	215.9
	소계(a)	14.0	35.0	43.8	54.7	68.4	215.9
세 출	○ 기본재산	5	-	-	-	-	5
	○ 사업비	51.0	91.4	108.3	130.8	148.2	529.7
	○ 인건비	36.8	46.5	53.9	64.9	73.2	275.3
	○ 운영경비	10.2	7.7	8.0	8.8	9.1	43.8
	소계(b)	103.0	145.6	170.2	204.5	230.5	853.8
□ 총 비용(a-b)		-89.0	-110.6	-126.4	-149.8	-162.1	-637.9

주1) 기본재산 5억원 및 연도별 정원('18년 50명, '19년 65명, '20년 75명, '21년 90명, '22년 100명) 기준

주2) 운영경비는 사무실임차료(보증금 등), 자산취득비(PC 등) 포함 산정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억원)

연도		1차년도 (’18)	2차년도 (’19)	3차년도 (’20)	4차년도 (’21)	5차년도 (’22)	합계
구분	국 비						
시비	지방세수입	89.0	110.6	126.4	149.8	162.1	637.9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 등						
	민 간						
	기 타	14.0	35.0	43.8	54.7	68.4	215.9
	합 계	103.0	145.6	170.2	204.5	230.5	853.8

5. 덧붙이는 의견

-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기반시설 및 안전·방재 등 서울시의 당면한 자연과학(기술 분야)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으로 설계되어 기관 자체 수익창출은 최소 수준(수탁사업 수행 등)으로 고려되었음
- 다만, 재단 설립 후 5년간 비용추계가 총854억(’18년 103억)임에 따라 장기적으로 외부기관 연구용역 수탁연구 수행 지속적 확대 추진 등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시 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겠음

6. 작성자 :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강정환(02-2133-8035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기본재산 : 5억원(재단설립시 주관부처 기본재산액 고려)
 - ※ 보건복지부 소관(7억원), 행정안전부 소관(5억원), 기획재정부 소관(3억원)
- 연간예산 : 인건비, 사업비, 운영비, 임대료(관리비), 자산취득비
 - ※ 인 건 비 : ’18년 기준 물가상승률 2.3% 반영(’07년~’16년 10년 평균)
 - 인건비외 : ’18년 기준 산정(물가상승률 미반영 추계)

연도	항 목	내 역	예상금액 (천원)	산출기초
2018	재 단 설 립	기본재산	500,000	재단설립시 주관부처 기본재산액 고려
	재 단 운 영	인건비	3,675,500	▶ 조직 : 2부, 1실 ▶ 인원 : 50명(원장1, 부(실)3, 부서장8, 직원38) ▶ 내용 : 급여, 부대인건비 급여 2,940,400천원+부대인건비(급여의 25%) 735,100천원
		사업비	5,104,414	▶ 도시문제 해결 : 재난, 노후 도시기반시설 등 ▶ 시정책심과제 직접연구 ▶ 연구성과 적용 정책수립
		운영비	426,185	▶ 업무추진비, 관서운영비, 선택적복지, 특근매식비, 여비, 제세공과금, 홈페이지, 차량유지비 등

연도	항 목	내 역	예 상금 액 (천 원)	산 출기 초
		임차료	446,556	▶ 임대면적 : 1,500㎡[입주면적(전용+공용) 기준] - 보증금 : 202,980천원 - 임대료 : 140,976천원 - 관리비 : 102,600천원
		자산취득비	147,345	▶ 사무가구, 사무장비 등
		계	10,300,000	
2019	재단 운영	인건비	4,648,513	▶ 조직 : 2부, 1실 ▶ 인원 : 65명(원장1, 부(실)3, 부서장8, 직원53) ▶ 내용 : 급여, 부대인건비 급여 3,718,810천원+부대인건비(급여의 25%) 929,703천원
		사업비	9,144,161	▶ 도시문제 해결 : 재난, 노후 도시기반시설 등 ▶ 시정책심과제 직접연구 ▶ 연구성과 적용 정책수립
		운영비	475,000	▶ 업무추진비, 관서운영비, 선택적복지, 특근매식비, 여비, 제세공과금, 홈페이지, 차량유지비 등
		임차료	260,626	▶ 임대면적 : 1,605㎡[입주면적(전용+공용) 기준] - 임대료 : 150,844천원 - 관리비 : 109,782천원
		자산취득비	35,700	▶ 사무가구, 사무장비 등
		계	14,564,000	
2020	재단 운영	인건비	5,389,625	▶ 조직 : 2부, 1실 ▶ 인원 : 75명(원장1, 부(실)3, 부서장8, 직원63) ▶ 내용 : 급여, 부대인건비 급여 4,311,700천원+부대인건비(급여의 25%) 1,077,925천원
		사업비	10,829,182	▶ 도시문제 해결 : 재난, 노후 도시기반시설 등 ▶ 시정책심과제 직접연구 ▶ 연구성과 적용 정책수립
		운영비	507,400	▶ 업무추진비, 관서운영비, 선택적복지, 특근매식비, 여비, 제세공과금, 홈페이지, 차량유지비 등
		임차료	271,993	▶ 임대면적 : 1,675㎡[입주면적(전용+공용) 기준] - 임대료 : 157,423천원 - 관리비 : 114,570천원
		자산취득비	23,800	▶ 사무가구, 사무장비 등
		계	17,022,000	

연도	항 목	내 역	예 상금 액 (천 원)	산 출기 초
2021	재단 운영	인건비	6,488,368	▶ 조직 : 2부, 1실 ▶ 인원 : 90명(원장1, 부(실)3, 부서장8, 직원78) ▶ 내용 : 급여, 부대인건비 급여 5,190,694천원+부대인건비(급여의 25%) 1,297,674천원
		사업비	13,083,889	▶ 도시문제 해결 : 재난, 노후 도시기반시설 등 ▶ 시정책심과제 직접연구 ▶ 연구성과 적용 정책수립
		운영비	556,000	▶ 업무추진비, 관서운영비, 선택적복지, 특근매식비, 여비, 제세공과금, 홈페이지, 차량유지비 등
		임차료	289,043	▶ 임대면적 : 1,780㎡[입주면적(전용+공용) 기준] - 임대료 : 167,291천원 - 관리비 : 121,752천원
		자산취득비	35,700	▶ 사무가구, 사무장비 등
		계	20,453,000	
2022	재단 운영	인건비	7,322,662	▶ 조직 : 2부, 1실 ▶ 인원 : 100명(원장1, 부(실)3, 부서장8, 직원88) ▶ 내용 : 급여, 부대인건비 급여 5,858,129천원+부대인건비(급여의 25%) 1,464,533천원
		사업비	14,819,728	▶ 도시문제 해결 : 재난, 노후 도시기반시설 등 ▶ 시정책심과제 직접연구 ▶ 연구성과 적용 정책수립
		운영비	588,400	▶ 업무추진비, 관서운영비, 선택적복지, 특근매식비, 여비, 제세공과금, 홈페이지, 차량유지비 등
		임차료	300,410	▶ 임대면적 : 1,850㎡[입주면적(전용+공용) 기준] - 임대료 : 173,870천원 - 관리비 : 126,540천원
		자산취득비	23,800	▶ 사무가구, 사무장비 등
		계	23,055,000	